



# 한국기업금융평가원

## 컨설팅 안내



# 법인전환

## 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고려 이유

중소기업, 자영업자, 소상공인, 기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들이 세법변경(세율)으로 당황스런 상황이 발생.

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확대가 가장 까다로움

### 2015년 세율 (지방소득세 생략)

성실신고확인제 구분		개인		법인	
도소매업, 광업	20억 이상	1,200만원 이하	6%	2억 이하	10%
제조업, 음식숙박업	10억 이상	1,200~4,600	15%	2억~200억	20%
서비스업 (교육, 병원, 기타서비스)	5억 이상	4,600~8,800	24%	200억 초과	22%
		8,800~1.5억	35%		
		1.5억 이상	38%		

## ■ 법인전환 시기

- 개인과 법인의 세율이 워처럼 2~4배 까지 차이가 남
-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매출액기준 도소매는 30억→20억, 제조업은 15억→10억, 서비스업은 7억→5억으로 매출액이 하향 인하여 대상자가 확대 됨
- 성실신고대상 사업주가 되시면 경비인정(증빙문제), 성실신고비용 등 여러 가지 경비지출 부분이 추가로 생기게 됨

**해결책 : 법인전환**

### 법인전환 시 절세방향 및 주의사항

- 법인설립시 작성하는 법인정관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, 사업주는 법 적용 예외임
- 임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므로 유족보상금지급규정, 임원보수지급규정, 상여금지급규정, 퇴직금지급규정, 퇴직위로금지급규정 등의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어야 함
- **퇴직금과 유족보상금규정 등이 절세와 관련**
- 법인전환시 또는 신규법인 설립시 법인정관이 중요한 만큼 잘 정비해야 하고 **최신 세법에 맞게 매년 수정을 해야 함**

최근 임원퇴직금관련 세법이 변경되어, 2015년도가 지나면 2016년부터 임원퇴직금관련 세율이 불리하게 적용됨.

(예: 퇴직금수령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)

따라서 매년 바뀌는 세법에 관심을 갖고 정관변경에 신경을 써야 함.

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또는 신규법인 설립시 특허권, 영업권평가를 통하여 비용처리 및 절세도 가능합니다.